

제 1134 호
1985. 7. 12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도관
편집인 : 서울특별시청 영도관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보

차 례

◎ 조 례	
제 2011 호 : 서울특별시상수도공제조례중 개정조례	3
◎ 고 시	
제 457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결정 및 변경결정	3
제 458 호 : 주택개발구역을 변경 (면적정정) 고시	4
제 459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개설) 실시계획인가	4
제 460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매시장) 변경시행허가	6
제 461 호 : 골재운반을 위한선박의 운행허가고시	7

< 이 면 제 속 >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◎ 공 고

제 387 호 : 고덕지구중심상업지역도시설계(안) 공람공고	8
제 388 호 : 도시계획사업(공원조성)시행공람공고	9
제 389 호 : '85년도중소기업채정자금지원대상업체선정공고	9
제 390 호 :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체지정취소	10
제 392 호 : 임용후보유효기간연장공고	10
제 393 호 : 도시계획시설(시장)실시계획공람공고	11
제 394 호 : 전문건설업영업정지 처분	12
제 395 호 : 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업체실효처분	12
제 396 호 : 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	12

◎ 사 령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5년 7월 12일
서울특별시장 염보현

서울특별시조례제 2011 호
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상수도공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중 “200 억원”을 “450 억원”으로 하고 “서울특별시장” 다음에 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를 삽입한다.

제 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중 “권면 금액”은 “액면금액”으로 하고 동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상수도 공채의 최저매입액은 5천원으로 한다. 다만 상수도공채매

○ 시설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(m)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로	3	6m	120	성동구광장동 259-7	광장동 266	일부구간(L=40m) 위치변경
변경	"	3	6	120	"	"	
기정	"	1	10	190	성북구종암동 29-26	종암동 29-26	제지
원경	"	1	"	10	"	"	
○ 변경 도면표시와 감음 (도면생략)							

입액중 5천원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
는 그 단수가 2,500 원이상 5,000
원미만일 때에는 이를 5,000 원으로
하고 2,500 원미만일 때에는 단
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 4 조 제 1 항 중 “연 8%”는 “연
6%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57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및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도시계획법제 12 조 1 항 및 같은법시행령제 6 조 1 항 1 호나목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제 12 조 4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면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7.12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58 호

주택개량개발구역변경(면적정정) 고시

1. 건설부고시제 470 호 (73.12.1), 같은고시제 155 호 (82.4.26), 같은고시제 352 호 (82.9.7) 로 주택개량개발구역지정된 북가좌제 1 구역에 대하여,
2. 도시재개발법 제 4 조 및 제 8 조

와 같은법시행령 제 58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거 구역변경(면적정정) 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.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청 주택과,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7.12

서울특별시장

가. 내역

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비고
		기정	변경(정정)	
북가좌제 1 구역	서대문구북가좌동 145 번지일대	34.486	34.425	

나. 도면: 별첨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59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개설) 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고시제 419 호 (83.12.23) 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698 호 (83.12.26) 로 지적승인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335 호 (85.5.21) 로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도로(봉천동 산복도로 개설공사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, 동시행령 26 조, 2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도로개

설공사)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한다.

1985.7.12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산 101-96- 산 101-358 간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봉천동 산복도로개설공사)

다. 사업의규모: 도로개설 B=6m

<p>L = 432 m</p> <p>콘크리트포장 (대 = 20cm) A = 23.6 a</p> <p>하수도 (D = 450-600 mm) L = 440m</p> <p>옹벽 (역T형) M = 4.5-6.5 m L = 38 m</p> <p>옹벽 (반중력식) M = 2-4 m L = 120 m</p> <p>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(관악구청장)</p> <p>마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</p>	<p>○ 확공 : 시행인가일로부터 15 일 이내</p> <p>○ 준공 : 인가일로부터 1985.12.21까지</p> <p>바.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: 별첨</p> <p>사. 토지 (건물) 소유자의 토지수용법 제 4 조, 3 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 관청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</p> <p>아. 시행인가 설계도서 : 별첨 (계 제생략)</p>
---	---

토 지 조 서

연번	소재지지번	지목	지적	전입 면적	실제이 용상황	소유자 주소 성명		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
						관	개인주소성명	
1	산 101-376	임	208	208		동작구사당동 64-113 정채룡	가등기압류	
2	산 101-337	"	210	210		용산구동빙고동 310번지 하계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		
3	산 101-338	"	126	126		동작구사당동 64-113 정채룡		
4	산 101-344	"	72	72		용산구동빙고동 310번지 하계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		
5	산 101-345	"	53	53		관악구봉천동 산 101 권동식의 110% 인천시 남구만수동 299번지 근저당 보르네오통상(주) 종로구관철동 10번지 한국외환은행 (특수관리부)		
						인천시 남구만수동 299번지 보르네오통상(주) 종로구관철동 10번지 한국외환은행 (특수관리부)		

물 건 조 서								
일련 번호	소재지번호	물건의 종 류	구조및 규 격	수 량	실제이 용상황	소 유 자 주 소 성 명		소유권이의 의권리명세
						관 계 인 주 소 성 명		
1	산 101-251	건물	관 자	22	주 거	봉천동산 101	안선순	
2	산 101-253	"	세멘조	11	"	"	이충미	
3	산 101-86	"	"	9	주거겸용	"	김성환	
4	산 "	"	관 자	2	주 거	"	박덕선	
5	산 101-87	"	천 막	2	"	"	송한성	
6	산 "	"	세멘조	1	"	"	강명호	
7	산 "	"	"	53	"	"	김사현	
8	산 "	"	"	19	"	"	이종형	
9	산 101-2	"	"	25	주거겸용	"	김자별	
10	산 "	"	"	4	주 거	"	권종영	
11	산 "	"	"	3	"	"	정유동	
12	산 "	"	"	6	"	"	장원선	
13	산 "	"	"	8	"	"	이재유	
14	산 "	"	"	6	"	"	이인연	
15	산 "	"	벽돌조	11	"	"	조태섭	
16	산 "	"	세멘조	1	"	"	박용득	
17	산 "	"	세멘부러	12	"	"	고동섭	
18	산 101-69	"	벽돌조	7	"	"	정대균	
19	산 101-79	"	세멘조	132	"	"	황태일	
20	산 101-371	"	"	66	"	"	배재우	
21	산 "	"	"	39.6	"	"	정숙근	
22	산 101-270	"	"	33	"	"	박학출	
23	산 101-271	"	"	33	"	"	윤상원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60호

도시계획사업(도매시장)변경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239호(83.4.27)로

사업시행허가되고 동고시제 433호
(83.8.20) 동고시 제 467호(83.9.8)
동고시제 104호(84.2.27) 동고시제
599호(84.10.13)로 변경시행허가
된 강남구 서초동산 58번지(서초동

590 구획) 일대 도시계획사업(도매시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6조1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7.12

서울특별시

가. 사업시행지: 강남구서초동산 58번지 (서초동 590 구획)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 (도매시장) 변경시행

다. 사업시행자: 강남구반포동 1176번지 반포아파트 63동 503호 정철신 강남구서초동산 56-9(주)한일유통대표 김효순

라. 사업의 규모

- 시설면적 - 32,680 ㎡
 - 계획면적 - 32,680 ㎡
 - 시행면적 - 14,243.36 ㎡
 - 건축면적 - 6,194.24 ㎡
 - 건축연면적 - 71,336.95 ㎡
 - 도매시장 - 42,939.53 ㎡
- (지하 1층 - 지상 8층)

- 사무실 - 14,088.80 ㎡ (도매시장외·별도용도)
- 전시시설 - 1,827.92 ㎡
- 기타 - 12,480.21 ㎡ (주차장, 기계실)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(1) 착수일 1983.8
- (2) 준공예정일 1985.5.30
- (3) 변경준공예정일 1985.12.31

바. 기타사항 변경없음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61 호

골재운반을위한선박의운항허가고시

당시 한강구역내에 하천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채취된 골재운반을 위한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7.12

서울특별시

○ 골재운반을 위한 선박의 운항허가내용

공구	접용수허가자	점 용 위 치	점용목적	점용내역
1	동아건설산업(주) 임원수	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동 1551 천 (한강종합개발 제 1 공구구간)	골재운반	에 인선 1대 바지선 2대

○ 점용허가기간 : '85.7-85.12.31
* 허가기간은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87 호

고덕지구중심상업지역도시설계(안)
공람공고

1.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
가. 대상구역

기종합계획으로 수립된 고덕지구중심 상업지역 도시설계(안)을 수립하여 건축법 제 8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5.7.11

서울특별시 장

구 분	위 치	규 모
고덕지구 중심 상업지역도시설계	강동구명일동 일원	면적 91,680 ㎡

나. 도시설계 주내용
○ 대지에 관한 사항
- 대지의 분할, 대지의 합병
○ 건축물에 관한 사항
- 용도, 높이, 건축한계선, 건축지정선, 벽면한계선
○ 옥외공간에 관한 사항

- 주차장의 위치, 주차방식, 공공공지, 공공조정
○ 통로에 관한 사항
- 유개보행통로, 보행전용통로
다. 공람기간 : 85.7.16-85.8.14
라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청 건축지도과 및 강동구청 건축과
* 관계도서 생략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88 호

도시계획사업(공원조성)시행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제 243 호(84.7.7) 호 및 건설부고시제 429 호(84.11.3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조성)결정되고, 서울시고시제 660 호(84.11.15)로 지적승인된 양재근린공원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공원조성)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람 공고한다.
2. 관련도서는 강남구청(공원녹지과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.

1985.7.11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89 호

'85년도중소기업재정자금지원대상 업체선정공고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 운용요강 및 동 집행요령에 의거 '85년도 중소기업 재정자금 지원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용자금 액을 결정하였기 공고한다.

1985.7.11

서울특별시장

1. 용자총액 : 390,000,000 원
2. 업체당용자액 : 30,000,000 원
3. 자금구분 : 운전자금
4. 용자조건 : 이자율 - 년 10 %
상환기간 - 3년 (1년 6월지차 1년 6월분할상환)
5. 용자선정업체 : 13 개업체
(용자선정업체명단) 별첨

용 자 선 정 업 체

(단위 : 천원)

번호	구분 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주생산업종	용자결정액	
					신청액	결정액
1	근흥산업(주)	이형섭	동작구상도동 356-1	완구	30,000	30,000
2	컨트리섬유(주)	유호선	마포구공덕동 382-6	기성복	30,000	30,000
3	태북에리아스공업사	김익경	성북구하월곡동 49-6	의류	30,000	30,000

번호	구분 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주생산품	용자결정액	
					신청액	결정액
4	삼미섬유공업사	김용태	도봉구쌍문동 103-152	양 말	30,000	30,000
5	우양전자	박상길	관악구산림3동 706-112	콘덴샤	30,000	30,000
6	한독양말공업사	김상철	성동구성수2가 272-27	양 말	30,000	30,000
7	세원공업사	양희창	구로구독산동 330-16	TV부품금형	30,000	30,000
8	삼일전기공업사	이홍남	성동구성수2가 272-22	전기용품	30,000	30,000
9	신도물산(주)	김현섭	은평구용암동 90-1	두부류, 구약류	30,000	30,000
10	대성프라스틱 공업(주)	이성남	구로구가리봉동 536-6	가전전자제품	30,000	30,000
11	대경상사	염명환	" 60-6	의류	30,000	30,000
12	삼원기업사	임휘일	강서구염창동 261-5	스텐레스제조	30,000	30,000
13	계림사	이강호	강남구학동 148	의류	30,000	30,000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90 호

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체지정취소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 조 제 1 항
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

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업체
를 지정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
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의거 이
를 공고한다.

1985.7.11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지정번호	면허종별	업 소 명	대표자	소재지	사 유	조치내용
82	1 종	(주) 금중	남상준	미근동 193	무단이전	지정취소
38	1 종	용화설비	오인균	홍제동 273-116	"	"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92 호

임용후보유효기간연장공고

지방공무원법 제 36 조 제 4 항의 규
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

기술직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
간을 연장 공고한다.

1985.7.11

서울특별시장

다 음							
등록번호	성명	성별	년령	직렬	직급	명부유효연장기간	비고
109	김성술	남	28	토목	9급	86.7.13	
110	정락훈	"	27	"	"	"	
111	허영엽	"	26	"	"	"	
112	이재호	"	26	"	"	"	
113	김용희	"	28	"	"	"	
114	노창근	"	27	"	"	"	
115	이윤권	"	28	"	"	"	
116	조용환	"	27	"	"	"	
119	최희권	"	29	"	"	"	
120	이한수	"	26	"	"	"	
121	김태현	"	26	"	"	"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93 호

도시계획시설(시장)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418 호(85.6.26) 지적고시된 진음동 540-2의 3필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시장)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 허가에 따른 서류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나 동사업에 따른 의견을 공람기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

기바란다.

1985.7.11

서울특별시장

공 람 개 요

- 가. 사업의시행지: 서울시성북구진음동 540-2번지의 3필지
- 나. 사업의종류: 도시계획사업(시장)
- 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
 - (1) 대지면적: 9,093 ㎡
 - (2) 건축면적: 2,027 ㎡
 - (3) 연면적: 8,426 ㎡ (지하 1층, 지상 3층)*
 - (4) 사업시행자주소: 서울시성북구진음동 535-4 일신상사(주) 대표이사 김기민
 - (5) 사업시행기간: 85.7-85.11.10. (예정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94 호
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
 건설업법을 위반한 다음 업체에 대
 하여 건설업법 제 50 조 제 2 항 2 호의
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영업정지
 처분을 하였기 공고한다.
 1985.7.11
 서울특별시장

업종및면허번호	상 호	대표자	영업소재지	사 유	영업정지기간	근거법규
조경식재 (서울 18-27), 조경 시설물 (서울 19-21)	원일조경	박세순	구로구시흥 1동(나) 109-1	도급한도액초과 도급	85.7.10- 86.1.9	건설업법 제 50 조 2 항 2 호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95 호
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업체실효처분
 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항의 규정에
 의거 아래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
 업체에 대하여 실효처분하였기 전기
 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공
 고한다.
 1985.7.12
 서울특별시장

면허번호	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처 분	사 유
1045 호	동림건설	천호동 315	한동익	면허실효 처 분	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항 (공사업폐지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96 호
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
 전기사업법 제 31 조 제 1 호의 규정
 에 의거 아래 제 2 종 전기공사업면
 허업체에 대하여 그 면허를 취소처
 분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
 정에 의거 공고한다.
 1985.7.12
 서울특별시장

면허번호	업 체 명	소 재 지	대 표 자	처 분	사 유
953	파나전기	강남구청담동86	박의식	면허취소	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1호 (면허기준미달)
959	명훈건설공사	강남구서초217-2	한유연	"	"
992	오경건설공사	강남구반포동 273-6	안두경	"	"
995	국제전기	강남구삼성154-4	정덕훈	"	"

사 령

◎ 1985년 7월 12 일자

령 제 252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정유덕	내무국 총무과근무를 명함	구로구 수도관리과	지방행정서기

◎ 1985년 7월 11 일자

령 제 253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이성배	올림픽기획담당관(86 전국통합 채진준비요원) 파견 (85.7.12-86.7.11)	교통기획과	지방행정주사보
박동진	"	성동구기획감사과	"
이광호	"	강남구	지방행정서기보

서 울 특 별 시 장